1-1-3 농번기 중식 지원 마을 확대(25개 마을)

사업 기간	임기내 완료☑ 임기후 계속☐	사업 성격	신규사업☐ 계속사업☑	예산 구분	예산사업☑ 비예산사업☐	주관 부서	기술지원과 지도기획팀	담당자	최승훈 2443

【사업목표】

-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완화와 일손부족 해소 기여
-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품앗이 확산 등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 확산

1. 사업개요

❍ 사 업 량 : 137개 마을

❍ 사 업 비 : 1,126백만원(도비 153 / 군비 973)

- 마을당 7백만원 지원

❍ 사업기간 : '22년 ~ '26년

❍ 사업대상 :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15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

❍ 사업내용 : 공동 급식소 운영비(조리원 인건비, 부식비) 지원

※ 2022년도는 37개 각 마을당 5백만원 지원으로 추진 중

(단위 : 마을, 백만원)

구분	민선 7기 실적				민선 8기 계획						증감
연도	계	'19	'22	'21	계	'22	'23	'24	'25	'26	
사업량	51	10	18	23	137	37	25	25	25	25	86
사업비	241	50	78	113	885	185	175	175	175	175	644

2. 추진계획

❍ 자격 및 요건

-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15인 이상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

※ 코로나19 지속으로 '21년, '22년은 한시적으로 도시락 급식도 가능하였으나, '23년부터는 사업목적에 맞게 급식시설을 구비 한 마을만 지원

- 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마을의 신청량 초과 시 본사업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횟수가 적은 마을 우선 선정

❍ 사업신청 : 사업 희망마을은 1일 평균 급식인원, 급식대상 농업인 등 연 급식계획에 대해 마을총회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에 신청

❍ 사업선정 :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·요건 및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는 마을 또는 우선 선정 요건을 갖춘 마을 선정

❍ 지원기준 : 7,000천원 / 마을

❍ 사용용도 : 조리원 인건비, 부식비

- (20명 기준) 조리원 인건비 : 40천원 × 1명 × 70일 = 2,800천원
- (20명 기준) 부식비 : 3천원 × 20명 × 70일 = 4,200천원

※ 매년 강원도 사업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 및 부식비 단가 등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
❍ 급식기간 : 20명 기준 70일 범위 내에서 급식 기간 결정

- 마을별 주요 농작업 시기를 감안하여 마을에서 자율추진

※ 마을별 급식 인원에 따라 급식 일수는 달라질 수 있음

❍ 급식대상 : 농촌 마을에서 실 영농에 종사 중인 마을주민

※ 급식대상 세부 결정에 대해서는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들과 협의 후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

3. 소요예산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 ('19~'21)	연도별					
			소계	'22	'23	'24	'25	'26
계	1,126	241	885	185	175	175	175	175
국 비	-	-	-	-	-	-	-	-
도 비	153	55	98	18	20	20	20	20
군 비	973	186	787	167	155	155	155	155
기 타	-	-	-	-	-	-	-	-